

공화당 당헌

【 2020년 03월 06일 제정 】

1차 개정 2020. 06. 13.

2차 개정 2022. 09. 17.

3차 개정 2024. 01. 17.

4차 개정 2024. 02.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일류 공화를 실천하는 ‘공화당’ 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화당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어온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한다.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옹골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하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앞장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하며, 개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도전정신과 성과가 보상받도록 하면서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한편, 소득·지역·세대·이념·성 등에 의한 격차나 차별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 앞선 세대의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가도록 하며, 미래세대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재정배분, 자원·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역사적 경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혁신하여 국부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 공화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가 있을 때 법에 따라 각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당은 서울에, 시·도당은 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③ 공화당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당대회와 전국대의원회, 상임전국대의원회를 집행기관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을 두고,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대의원대회와 상임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당원) ① 법령에 의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공화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원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당비납부 교육 및 정당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 자를 책임당원으로 한다.

-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 당원제를 둔다.
-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과 책임당원, 예비당원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 당헌, 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 3.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권리
-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 2.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 5. 당이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의무
- 6.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 7. 당비납부의 의무

③ 당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 제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다른 당원에게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도 안 된다.

제7조(여성당원, 청년당원, 장애인당원 등의 지위와 권리) 공화당은 여성, 청년, 장애인 당원 등의 정치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포상과 징계) ① 당의 생성, 유지와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외부인 및 외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은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전당대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①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전당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0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재정위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7.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장과 주요 부서장
 8.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9.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0.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11. 시·도당위원장
 12. 시·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13. 시·도당 상임위원
 1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5. 시·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16.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17.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8.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19.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5명 이내
 20. 당 소속 시·군·구의 장
 21.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22.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 ③ 전당대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권한) ① 전당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임기는 각 2년이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 전당대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전국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전당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년차 정기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전당대회 의장의 선출 및 임기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대의원의 임기) 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궐석이 있어 보충된 대의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전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전당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제2절 전국대의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의 수임기구로서 대의기관이며,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해 의결한다. 전국대의원회는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이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을 겸한다.

② 전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되, 300명 이내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3.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재정위원
4. 당 소속 시·도지사
5. 당 소속 국회의원
6. 중앙위원회(직능) 산하 각 위원장
7. 정책연구원, 교육원의 장과 주요 부서장
8. 중앙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무직 당직자
9. 당대표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0. 중앙당 사무총장 및 사무처당직자
11. 시·도당위원장
12. 시·도당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

13. 시·도당 상임위원
 1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상임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
 15. 시·도당 법정 유급당직자
 16.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17. 우리 당의 당원인 전직 국회의원, 장·차관 또는 시·도지사
 18. 당 소속 시·군·구의 장
 19.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20. 해외동포위원회가 추천하는 재외국민 대의원
- ③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전국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의 권한 행사
2. 전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전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 의결
4.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6.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7. 전국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중앙당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9. 최고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10. 기타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의 행사
11. 최고위원회가 부의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안에 대한 의결

제16조(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대의원회는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 위원 1/3을 초과한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국대의원회는 연 2회 상하반기마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의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상임전국대의원회

제18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대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전국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으로 한다.

③ 상임전국대의원회 위원은 전국대의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각 호의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1. 전국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2.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의원총회 선임 국회의원
5. 원외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협의회 선임 상임전국대의원
6.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중앙위원회 상임전국대의원 5인
7.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대의원 5인
8.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대의원 3인
9.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대학생상임전국대의원 2인
10.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장애인상임전국대의원 3인
11.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
12.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시·도별 대표의원

④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위원은 선출직 이외의 다른 당직을 겸할 수 없으며,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당직은 예외로 한다.

1. 원내부대표
2. 정책위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
3. 정책연구원장, 교육원장

⑤ 겸직을 금하는 당직의 범위와 선출방식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권한) ① 상임전국대의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 기본정책, 당헌 안의 심의 및 작성
2. 당규의 제, 개정 또는 폐지
3. 임시전당대회 소집 요구
4. 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5.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6. 전국대의원회가 회부하는 안건의 의결
7.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8.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및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최고위원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 처리

② 상임전국대의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소집 및 운영) ① 상임전국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회는 월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긴급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상임전국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제21조(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창당대회에 한하여 당대표에게 최고위원 위촉 권한을 부여한다.

②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대표의 궐위나 유고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3.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4.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당 예산의 편성
6.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당헌, 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③ 당대표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비서실, 대변인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최고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①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최고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선출직 최고위원
4. 지명직 최고위원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 의장

③ 최고위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전국대의원회의와 상임전국대의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공천관리위원장 임면 의결
5.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6.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7. 시·도당 위원장 임면에 관한 심의, 의결
8. 당무전반(시·도당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9.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10.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11.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또는 사고당 사고지역당원협의회 판정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4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인 당대표가 소집한다. 당대표가 소집하지 못하거나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중 다수득표자순으로, 사무총장, 득표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③ 최고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무집행기구

제25조(사무처) ① 사무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 당무집행을 보좌하는 기구다. 사무처 산하에 본부와 국 실 등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당의 전략, 조직, 홍보, 인사, 재정 등을 총괄하며, 약간 명의 부총장, 홍보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당대표의 승인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장 등을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정책위원회) ①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정책조정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활동 등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제5장 당대표 직속기구

제27조(당기위원회) ① 당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당기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관이며, 당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최종 심급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⑤ 시·도당기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의 직속기관이며, 당원 징계에 관한 1심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는다.
- ⑥ 기타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⑦ 당원과 당기위원회가 참고할 윤리기준을 당규로 정한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 ③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관련 2심 판정권을 가진다.
- ④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 내의 모든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며,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1심 판정권을 가진다.
- 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 예산과 결산을 심의 및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선출 및 업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 ① 당무에 관해 조언을 듣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당대표가 위촉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의 위촉 기간은 당대표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고문, 자문위원, 국책자문위원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1조(상설위원회) ①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위원회(직능)
2. 자유통일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안보위원회
5. 외교위원회
6. 인권위원회
7. 북한인권위원회
8. 재정위원회
9. 법률자문위원회
10. 여성위원회
11. 청년위원회
12. 고령자위원회
13. 장애인위원회
14. 지방자치위원회
15. 대외협력위원회
16. 국제문제위원회
17. 해외동포위원회
18. 문화종교위원회
19.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② 상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민생위원회) ① 민생 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계층, 분야, 과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노동·일자리위원회
2. 농어민위원회
3. 소상공인위원회
4. 서민주택위원회
5.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② 민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특별위원회)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기 위하여 다음의 특별위원회는 즉시 설치한다.

1. 주체사상근절대책특별위원회

2. 전교조대책특별위원회
3. 민노총대책특별위원회
4. 편파언론대책특별위원회
5. 청와대불법선거대책특별위원회
6. 역사교과서대책특별위원회
7. 기타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원회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4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전국대의원회 직속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5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 의결
2. 입법관련 주요정책, 국회에 제출할 법안 및 국회에서 논의될 의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36조(소집 및 운영)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의원총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7조(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38조(선출 및 임기) 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최고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39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및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 제40조(실무기구)** ①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 ②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원

- 제41조(정책연구원)**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개발·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의 재단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원을 설치, 운영한다.
- ② 연구원의 이사장은 당대표가 맡고, 연구원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 연구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교육원

- 제42조(교육원)** ① 당원의 사상논리의 확립과 정치상황 분석, 대 시민설득 능력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원을 둔다.
- ② 교육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며, 교육원장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③ 교육원은 각 지역 당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당원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일반 시민의 정치교육을 위하여 정치대학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⑤ 교육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지방조직

- 제43조(시·도당의 지위)**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통할한다. 또 시·도당은 해당 지역 당원과 일반시민을 상대로 우리당을 대표하고, 중앙당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당원과 직능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절 시·도당 대회

- 제44조(시·도당 대회)** ① 시·도당 대회는 시·도당 당원의 대의기구로서, 시·도당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시·도당 대회는 제9조 제2항 전당대회 구성원 중에서 해당 시·도당 당원인 자로 구성한다.
③ 시·도당 대회의 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는다.

제45조(권한) 시·도당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전처리
3.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제46조(소집) ① 정기 시·도당 대회는 정기전당대회 개최일 전까지 개최한다.

② 임시 시·도당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 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최고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2절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47조(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통할한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시·도당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헌 제4장 제1절 제23조 3항 7에 의해 선출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도당위원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없거나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절차와 방식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제48조(지위 및 구성)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집행기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각 위원회의 위원장

3. 사무처장
 4.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
-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제49조(권한)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기타 시·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소집)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기타 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사진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제4절 시·도당 당무집행기구

제51조(사무처) ① 시·도당의 당무 집행 기구로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통할하며, 시·도당 위원장을 보좌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④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당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52조(고문, 자문위원) 시·도당 위원장이 당무처리에 관한 조언을 듣기 위해 고문, 자문위원을 약간 명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53조(위원회) ① 시·도당에 상설위원회와 민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당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시·도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지역당원협의회

제54조(지위와 구성) ① 지역당원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들의 협의체이다.

- ②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협의회를 둔다.
- ③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은 지역당원협의회를 통할하고 지역당원협의회를 대표한다.
- ④ 지역당원협의회위원장 선출과 지역당원협의회 운영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55조(선거기획단)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기획단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6조(선거운동기구) ① 각급 공직선거 시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57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구성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부분 외부 인사를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5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구성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대표가 임명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제59조(인재영입기구)**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60조(추천기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반적인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제61조(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장 및 도지사 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을 선정하고 경선에 붙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심의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 결과에 따라 당대표가 후보자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인준함으로써 추천이 확정된다.
- ④ 당대표는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나 후보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우선추천을 할 수 있다.

제6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흠결이 없는 자
 2. 애국심이 행위로 검증된 자
 3. 전문성이 있는 자
 4. 리더로서 자질이 있는 자
 5. 적극적인 자
 6.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③ 당대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거인단에 부의한다.
- ④ 비례대표 추천 명단은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한다.
-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에 불이되, 당규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경선방법에 의한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최고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비례대표 추천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5조(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당원협의회 위원장(협의회)의 추천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선거인단 투표로 확정된다.

②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재 정

제66조(재정) ① 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당비는 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나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대표가 정한다.

⑤ 기타 재정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장 당헌 개정 등

제68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69조(당헌 개정안 발의의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의 발의가 있으면 전당대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대의원회 의장이 전국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당대회의 소집이 어려운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판단, 의결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전국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0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규의 제정 및 개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 당대표의 발의가 있을 경우
 2.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가 있을 경우
 3. 재적 당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을 경우
- ②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71조(당헌, 당규의 해석) 당헌, 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장 합당과 해산 및 청산

제72조(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대의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최고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② 당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최고위원회 또는 최고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청산결과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14장 보 칙

제73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는 당헌당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4조(의결 방법) ① 대의기관의 의결과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의결은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5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6조(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77조(당원명부 등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문서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관리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다.

② 사무총장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경우에 관련 문서와 인장을 적법한 인수자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 인장(인영)의 경우 책임자(각 시·도당위원장) 및 관리자(사무처장)에 대한 중앙당 최고위의 해임 결정이 난 후에도 중앙당에 즉시 자진 반납하지 않을 시 즉각 분실처리하여 정당업무를 정상화 한다.

제78조(지역조직 운영 특례) 시·도당 창당 전까지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소속기관은 본 당헌에서 규정하는 시·도당 및 그 소속기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제79조(비상대책기구)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대의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대의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③ 비상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이 당헌이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당초기 당직자의 임기) 중앙당 창당대회 전에 창당된 5개 시·도당의 대표, 공동대표 및 사무처장과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당 당대표 및 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중앙당 창당일 기준 2년으로 한다.

제3조(창당초기 당대표 권한 특례) 당대표(최고위원)는 최고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창당초기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강령과 당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 및 골격과 건전한 상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령과 당헌을 변경하고,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 칙(2024. 01. 17.)

이 당헌은 2024년 01월 1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